

『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□ 그러나 동 조례의 경우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

체는 그 국가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정작 관람료 감면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시지정 국가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.
 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